

「지적재조사 업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용어 한글화 및 책임수행기관제도 시행 등 「지적재조사법」 개정(‘21.7.) 반영, 지자체 건의사항 및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성공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개정 내용에 맞춰 규정의 용어와 별지 서식의 관계법률 근거조항을 수정하고, 용어의 오기 등을 바로 잡음

- 규정의 용어 중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함(안 제5조, 제9조)
- 일본식 용어 “입회”를 한글식 표기인 “참관”으로 함(안 제14조, 제15조)

- 나. 책임수행기관제도 시행에 따른 용어와 별지 서식 자구 수정
- “지적측량수행자”를 “측량자”로 함(안 제22조)
 - 별지 서식 자구 중 법률 근거조항을 수정함(별지 제1, 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0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지적재조사기획단)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의견(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 전자우편 : woqls74@korea.kr / 팩스 : 044-201-567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전화 044-201-46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